



보건복지부	보	도 참	ュ	자 료		
배 포 일		2020. 11. 20). / (총 24	/ (총 24 매)		
중앙사고수습본부	팀 장	박 은 정		044-202-1711		
전략기획팀	담 당 자	한 연 수		044-202-1714		
국무조정실	과 장	김 성 훈		044-200-2293		
보건정책과	담 당 자	박 현 수		044-200-2295		
인사혁신처	과 장	안 석		044-201-8440		
복무과	담 당 자	박 종 복		044-201-8444		
산업통상자원부	과 장	나 성 화		044-203-4220		
산업일자리혁신과	담 당 자	박 혜 수		044-203-4221		
중소벤처기업부	과 장	김 봉 덕	전 화	042-481-4341		
기획재정담당관실	담 당 자	이 정 훈		042-481-4411		
중앙사고수습본부	팀 장	김 정 숙		044-202-1720		
생활방역팀	담 당 자	이 성 경		044-202-1721		
환경부	과 장	이 채 은		044-201-7340		
자원순환정책과	담 당 자	김 도 기		044-201-7352		
식품의약품안전처	과 장	최 종 동		043-719-2051		
식품관리총괄과	담 당 자	심 연		043-719-2054		

<u>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 19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정례브리핑</u>

- ▲주요 지자체 코로나19 현황 및 조치사항, ▲일터 방역관리 추진현황, ▲지자체별 거리두기 단계 조정 가이드라인, ▲거리두기 단계별 1회용품 사용규제 적용방안 등 -
- □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본부장: 정세균 국무총리)는 오늘 정세균 본부장 주재로 정부서울청사 영상회의실에서 각 중앙부처, 17개 광역자치단체, 18개 지방경찰청과 함께 ▲주요지자체 코로나19 현황 및 조치사항, ▲일터 방역관리 추진현황, ▲지자체별 거리 두기 단계 조정 가이드라인, ▲거리 두기 단계별 1회용품 사용규제 적용방안 등을 논의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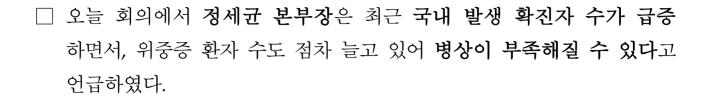












- 특히 중증환자 병상 확보에는 시간이 걸리는 만큼, **중수본과** 지자체에서는 미리미리 병상 추가확보에 나서줄 것을 당부하였다.
- □ 정 본부장은 거리 두기 1단계에서는 500명 집회의 경우 지자체에 신고·협의라는 요건밖에 없어 집회가 빈번하지 않은 지자체는 집회 방역관리에 혼선이 있을 수 있다고 있다고 언급하였다.
 - 이에 따라, 각 시·도에게 방역당국과 협의하여 소관 지자체의 집회 협의기준 및 현장 세부 방역관리 지침을 조속히 마련할 것을 주문하였다.
- □ 회의를 마무리하면서, 정 본부장은 연말이 다가오면서 지역별로 각종 행사, 축제 등이 개최되고 있지만, 현장에서는 기본적인 방역 수칙조차 지켜지지 않는 사례가 있다고 강조하였다.
 - 각 지자체에게 거리 두기 단계 조정, 방역조치 강화 등 자율권을 최대한 활용하여 지역 축제·행사에 대한 방역관리를 스스로 철저하게 해줄 것을 당부하였다.











1 코로나19 현황 및 조치사항 (서울, 경기, 강원, 경남, 전남)

- □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에서는 서울특별시(시장 권한대행 서정협), 경기도(도지사 이재명), 강원도(도지사 최문순), 경상남도(도지사 김경수), 전라남도(도지사 김영록)로부터 코로나19 현황 및 조치사항을 보고받 고 이를 논의하였다.
 - 서울특별시는 노인요양시설 및 주야간 보호시설에서 이용자 및 종사자를 통한 감염사례가 지속 발생함에 따라 외부인, 종사자 등에 대한 방역 관리를 강화한다.
 - 이에 따라 방문객, 자원봉사자 등 외부인의 시설 출입을 전면 금지하고, 사적모임 자제, 불요불급한 출장 취소, 고위험시설 방문자제 등 종사자 관리를 보다 강화할 예정이다.
 - 한편, 대중교통을 통한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해 11월 23일(월) 부터 27일(금)까지 택시운수 종사자 및 승객의 마스크 착용여부, 택시 내 손소독제 비치 여부 등을 점검할 예정이다.
 - 경기도는 주말을 맞아 11월 20일(금)부터 22일(일)까지 종교 및 문화·체육·관광시설에 대한 집중점검을 실시한다.
 - 이용 인원 제한 등 거리 두기 1.5단계 격상에 따라 변경된 방역 수칙을 지도 점검하고, 마스크 착용 행정명령 준수여부 등을 점검할 계획이다.
 - 강원도는 횡성군이 최근 1.5단계로 격상한 원주시의 인접 군으로 중복 생활권에 해당함에 따라 감염병 확산 예방을 위해 11월 21일 (토) 0시부터 12월 4일(금)까지 횡성군의 사회적 거리 두기를 1.5 단계로 격상한다.











- 경상남도는 최근 확진자가 다수 발생한 **창원시와 하동군의 사회적** 거리 두기를 1.5단계로 격상한다.
 - 하동군은 11월 19일(목)부터 별도 해제 시까지이며, 창원시는 11월 20일(금)부터 12월 3일(목)까지 2주간 적용된다.
 - 이에 따라 100인 이상 모임·행사가 금지되고, 학교는 등교 수업과 원격수업을 병행하는 등 방역 조치가 강화된다. 또한, 학교와 학원에서 집단감염이 발생한 하동군은 11월 19일부터 20일까지 학원에 대해 휴원토록 하였다.
 - 한편, 창원시, 사천시, 하동군 등 3개 시군을 코로나19 정밀방역 지원지역으로 정하고 2주간 집중적으로 예방교육과 감시점검을 강화하며, 필요한 물품과 인력 등을 적극 지원한다.
- 전라남도와 순천시는 최근 일일 환자 수, 집단감염 발생 현황, 공동 생활권인 광양시의 발생 현황, 수능시험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11월 20일(금) 0시부터 순천시의 사회적 거리 두기를 2단계로 격상하기로 하였다.
 - 이에 따라 중점관리 시설 중 유흥시설 5종은 집합금지가 적용되고, 직접판매 홍보관·노래연습장·실내 스탠딩공연장은 21시이후에 운영이 중단된다.
 - 카페는 포장·배달만 허용되고, 음식점도 21시 이후에는 포장· 배달만 허용된다.
 - 종교활동의 경우에는 참여 가능 인원이 좌석 수의 20% 이내로 축소되며, 모임과 식사는 금지된다.











2 이동량 분석 결과

□ 보건복지부 중앙사고수습본부(본부장: 박능후 장관)는 통계청이 제공한 △ 휴대전화 이동량, △카드매출 자료, △대중교통 이용량 자료를 활용하여 이동량 변동을 분석하였다.

< 이동량 분석을 위한 활용 자료(통계청 제공) >

활용정보	정보항목	보유기관	비고
휴대폰	인구 이동	S이동	S이동통신사 이용자가 실거주하는 시군구 외에 다른 시군구의 행정동을 방문하여 30분 이상 체류한 경우를 이동 건수로 집계
이동량	건수	통신사	
카드매출 자료	소비 금액	S카드사	S카드사 가맹점 매출액으로 전체 카드매출액 추정 다만, 보험/통신/홈쇼핑/온라인 업종 등은 제외
대중교통	수도권	서울시·	T사에서 정산한 수도권 내 버스(카드·현금), 지하철(도시철도
이용량	교통 이용	인천사경기도	포함), 택시(현금 제외) 이용현황

- 1 지난 주말(11월 14일~11월 15일)동안의 휴대폰 이동량은 수도권 35,890천 건, 전국은 74,032천 건이며,
 - 수도권 주말 이동량은 사회적 거리 두기 1단계 조정 직전 주 (10월 10일 ~ 10월 11일)대비 8.6%(2,842천 건) 증가하였다.
 - * 비수도권은 사회적 거리 두기 1단계 조정 직전 주(10.10~11) 대비 7.5% 증가
 - 직전 주말(11월 7일~11월 8일)과 비교하면 수도권은 **1.1%**(411천 건), 전국은 **1.2%**(871천 건) **감소**하였다.
 - * 수도권 : (11.7.~11.8.) 36,301천 건 → (11.15.~11.15.) 35,890천 건 전 국 : (11.7.~11.8.) 74,903천 건 → (11.15.~11.15.) 74,032천 건

< 주말(토·일) 휴대폰 이동량 >













- ② 수도권 버스·지하철·택시 합산 이용량은 사회적 거리 두기 1단계 조정 직전 주(10월 10일 ~ 10월 11일)대비 14.6%(2,942천 건) 증가하였다. 직전 주말(11월 7일~11월 8일)과 비교하면 1.6%(364천 건) 감소하였다.
 - * 합산 이용량 : (11.7.~11.8.) 23,480천 건 → (11.15.~11.15.) 23,116천 건

< 수도권 버스·지하철·택시 주말(토·일) 이용건수 >



- ❸ 카드 매출액은 수도권은 1조2792억 원, 전국은 2조1733억 원이며,
 - **수도권** 주말 **카드매출** 금액은 사회적 거리두기 **1단계 조정 직전 주** (10월 10일 ~ 10월 11일)**대비 8.1%**(958억 원) **증가**하였다.
 - 직전 주말(11월 7일~11월 8일)과 비교하면 수도권은 2.6%(339억 원), 전국은 1%(215억 원) 감소하였다.
 - * 수도권 : (11.7.~11.8.) 1조3131억 원 → (11.14.~11.15.) 1조2792억 원 전 국 : (11.7.~11.8.) 2조1948억 원 → (11.14.~11.15.) 2조1733억 원

< 주말(토·일) 카드 매출액 >













3 코로나19 의료대응 현황 및 방안

- □ 정부는 추적과 검사, 격리 조치를 신속히 추진하는 한편, **병상과** 생활치료센터를 적극 확보하는 등 안정적인 치료체계 구축에 만전을 기하고 있다.
 - 11월 19일 기준 전국의 중환자 병상 중에서 **즉시 입원 가능한** 병상은 112개로 여력이 있는 상황이다.
 - 이 중 중증환자 전담 치료 병상이 61개 병상이고, 각 병원에서 자율적으로 신고한 중증환자 치료 병상이 51개이다.
 - 권역별로는 수도권 51개, 충청권 14개, 호남권 10개, 경북권 5개, 경남권 17개, 강원 3개, 제주 12개 병상의 여유가 있다.
 - **감염병 전담병원**도 총 44개 병원 **3,882개 병상을 보유**하고 있으며, 이 중 1,600개 병상을 사용(**가동률 41.2**%) 중으로 **2,282개** 병상이 이용 가능하다.
 - 무증상·경증환자를 위한 생활치료센터는 10개 시설(정원 2,386명)을 운영하고 있으며, 817명이 입소(가동률 34.2%) 중으로 1,569명이 입실 가능하다.
- □ 코로나19 환자에 대해 최선의 치료를 제공하도록 **의료 역량을** 지속적으로 확충할 계획이다.
 - 중환자 병상의 경우 국가지정 입원치료병상 가운데 중환자 치료가 가능한 병상을 전담 치료 병상으로 지정하여 올해 말까지 전담 치료 병상을 총 200여 병상(216개)까지 확보할 예정이다.











- 또한, '중증환자 긴급치료병상 확충 사업'을 통해 23개 의료 기관에 총 1,054억 원을 지원하고, 내년 1분기 146병상, 내년 상반기 231병상 등 총 415병상을 추가로 확충, 코로나19 중환자 치료병상을 총 600여 병상(593개)까지 지속 확보할 예정이다.
- 아울러, 11월 16일부터 재원적정성평가위원회 운영을 통해 중환자의 증상이 호전되면 중증도 이하 병상으로 전원하여,
 중환자 병상의 순환을 활성화하고 자원을 효율적으로 관리하고 있다.
- 생활치료센터는 지속해서 확충 중으로 서울시에 최근 2개소를 신규 개소하였고, 추가로 1개소를 개소할 예정이다.
 - 또한, 수도권과 충청권에서 운영 중인 중수본 지정 권역별 생활치료센터 외에 경북권, 호남권의 추가 설치를 위해 지자체와 협의 중이다.
- 중환자 치료를 위한 간호사 인력도 양성 중으로, 현재까지 총 62명이 수료하였으며, 올 연말까지 약 400여 명(409명)을 양성할 예정이다.

4 일터 방역관리 추진현황

- □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는 인사혁신처(처장 황서종), 산업통상자원부 (장관 성윤모), 중소벤처기업부(장관 박영선)로부터 '공공·민간부문 일터 방역관리 추진현황'을 보고 받고 이를 논의하였다.
- □ **인사혁신처**는 코로나19로부터 안전한 근무환경 조성을 통한 안정 적인 행정서비스 제공을 위해 변화된 방역 기조에 맞는 공공부문 방역 관리에 노력하고 있다.











- 11월 7일 사회적 거리 두기가 5단계로 개편됨에 따라 '공무원 복무관리 지침'을 개정하고 거리 두기 단계에 맞춘 적정비율 재택근무, 점심시간 시차 운영 등을 실시하도록 하였다.
- 한편, 수도권 사회적 거리 두기가 1.5단계로 격상됨에 따라, 수도권 소재 정부 기관에 방역 관리를 강화하도록 요청하는 등 공공부문이 모범적으로 방역수칙을 준수하도록 조치하였다.
 - 사무실의 밀집도를 낮추기 위해 재택근무를 확대하고, 재택근무가 어려운 기관은 마스크 착용, 주기적 소독, 근무자 간 거리 두기 등 핵심 방역수칙을 지키도록 하였다.
 - 가능한 영상·전화·서면 등 비대면 방식으로 회의나 보고를 진행하도록 하고, 불가피한 대면 행사의 경우에도 개최지역의 거리 두기 단계에 따라 인원 제한 등의 지침을 준수하도록 하였다.
- 또한, 공공부문의 모든 기관에 대하여 수도권 등 거리두기가 1.5단계로 격상된 지역을 중심으로 재택근무 활성화, 대면회의·출장 자제 등 중수본에서 정한 '코로나19 중점 관리사항' 준수를 재강조 하는 등 방역수칙이 지속적으로 지켜질 수 있도록 독려할 계획이다.
- □ 산업통상자원부는 민간과 공공기관에서 방역 관리가 철저히 시행되도록 노력하고 있으며, 전시산업 등 중점관리 분야를 대상으로 방역 활동을 강화하고 있다.
 - 경제단체 및 업종별 협·단체의 회원사, 소관 공공기관을 대상 으로 사회적 거리 두기 1.5단계 격상에 따른 일반관리시설 방역 지침, 고위험사업장 방역지침, 모임·행사 방역지침 등 관련 지침을 전파하고, 적극적인 협조를 요청하였다.











- 또한, 중점관리 분야에 대한 방역 활동도 강화하고 있다.
 - 지난 11월 10일 전시산업진흥회를 통해 사회적 거리 두기 개편 방안의 단계별 방역 조치 사항을 반영한 '국내 전시회 개최 지침 (가이드라인)'을 개정·배포하고, 전시회의 방역수칙 준수 여부 등을 현장점검하고 있다.
 - 유통물류센터에 대하여 매월 합동 점검하는 등 지속적인 방역 관리를 실시하고 있으며, 코리아세일페스타 기간(11.1.~11.15.) 동안에 물류센터를 통한 감염 확산을 방지하기 위해 집중점검 등 철저한 방역 관리를 진행하였다.
- □ **중소벤처기업부**도 회원사에 근무 형태를 개선해 줄 것을 요청하고, 시장 등 중점 관리분야에 대한 방역을 강화하고 있다.
 - 우선 산하 공공기관 및 협·단체를 통해 회원사에 ①회식·모임 일체 자제, ②재택근무 활성화 및 시차출퇴근제, 점심시간 시차 운영 등 밀집도 최소화, ③대면회의·출장 자제, ④마스크 착용 등 방역 관리를 강화해 줄 것을 요청하였다.
 - 또한, 10월 26일부터 11월 31일까지를 집중방역 기간으로 정하고, 전통시장·상점가를 대상으로 **시장별 주 1회 정기소독**을 진행하며, 지방중기청·지자체가 방역점검반을 구성하여 상인과 이용자 대상 으로 **마스크 착용 등 방역수칙 준수 여부를 점검** 중이다.











5 지자체별 거리 두기 단계 조정 가이드라인

- □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는 보건복지부 중앙사고수습본부(본부장 박능후 장관)로부터 '지자체별 거리 두기 단계 조정 가이드라인'을 보고받고 이를 논의하였다.
 - 최근 코로나19 확산으로 일부 지자체에서 자체적으로 거리두기 단계를 격상*시키고 있으나, 통일적 기준이 미비하여 전국적으로 참고할 수 있는 기준·절차 필요한 상황이다.
 - * 충남 천안·아산, 강원 원주·철원·횡성, 전남 순천(2단계)·광양·여수·목포, 광주광역시, 경남 하동·창원 등
- □ 정부는 다음의 사항 등을 고려하여 **지자체별 거리 두기 단계 조정 지침**(가이드라인)을 마련하였다.
 - 먼저 단계 격상은 서민 경제에 피해를 입힐 수 있는 만큼 **지역의** 유행 위험도를 합리적으로 고려해야 한다.
 - 개편된 사회적 거리 두기 단계 기준을 인구 10만 명당 환자 수로 환산하면, 1.5단계는 1주간 일평균 환자 수가 인구 10만 명당 0.4~0.6명, 2단계는 인구 10만 명당 1명 내외일 때 격상이 이루어진다.

< 권역별 1.5단계 및 2단계 격상 기준 >

주간 일평균 확진자 수	수도권	충청권	호남권	경북권	경남권	강원	제주
1.5단계 격상 기준	100명	30명	30명	30명	30명	10명	10명
10만명당 환자 수 환산	0.4명	0.5명	0.6명	0.6명	0.6명	0.6명	1.5명
2단계 격상 기준	200명	60명	60명	60명	60명	20명	20명
10만명당 환자 수 환산	0.8명	1명	1.2명	1.2명	1.2명	1.2명	3명











- 또한, 인구 규모와 밀도, 주요 연령대, 의료자원 등에 따라 지역 사회 유행 위험도가 다르게 나타날 수 있으므로, 지자체의 다양한 인구 규모와 지리적 특성 등을 고려하면서도 통일적인 기준을 제시해야 한다.
- 마지막으로, 신속한 정보 공유와 대응이 가능하도록 중앙정부와 지자체 간의 유기적인 협력을 통해 단계 조정을 결정하고 관리해 나갈 수 있어야 한다.
- □ 이를 고려하여 **인구 규모에 따른 주간 환자 수**와 **집단감염 발생 양상**, 두 가지 지표를 개별 시·군·구의 단계 조정 기준으로 제시한다.
 - 지자체의 인구가 작을수록 소규모 집단감염에도 확진자 수가 크게 증감하는 경향이 있다. 이에 따라 **인구 10만 명 이하인** 지역은 **1주간 총 환자 수가 15명 이상**일 때 1.5단계로 상향할 것을 제시한다.
 - 그 외 지역은 인구 비례 기준을 활용하여 주간 하루 평균 확진자 수가 인구 10만 명당 1명 이상일 경우를 1.5단계 격상 기준으로 설정하였다.
 - 이와 함께, 집단감염이 특정시설 한 두 곳에 한정해서 발생하는지 또는 여러 집단에서 동시다발적으로 나타나고 있는지 등 **집단 감염 발생 양상도 중요한 판단 지표**이다.
 - 지자체는 제시된 기준을 참고하되, 시·도에서 주민의 생활권 등 지역 특성을 고려하여 단계 조정을 결정할 수 있다.











< 지자체별 단계 격상 참고 기준 >

구분		인구 10만 이하 지역	인구 10만 이상 지역		
		▶ 1주간 총 확진자 수 15명~30명	▶1주간 총 확진자 수		
	1.5단계	(주간 하루 평균 2~4명 수준)	인구 10만명당 7~14명		
주간			(안 10만탕쥐하루		
환자 수	2단계	▶ 1.5단계 조치 이후 1주 뒤에도	▶ 1.5단계 조치 이후 1주 뒤에도		
		1주간 총 확진자 수 30명 초과	1주간 총 확진자 수 인구 10만명당 14명 초과		
집단감염 양상		▶ 특정 시설 1~2곳에 한정하여 발생	→ 단계 격상 신중 검토 필요		
		▶ 여러 집단에서 동시다발적 발생 하더라도 단계 격상 가능	→ 주간 환자 수가 위 기준에 미달		

- □ 단계 조정 절차는 다음과 같다.
 - 기초지방자치단체(이하 '기초 지자체')가 격상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광역지방자치단체(이하 '광역 지자체')와 단계 조정 여부를 협의하고, 광역 지자체가 단계 조정 여부를 판단하여 중앙사고수습본부와 협의를 진행한다.
 - 광역 지자체가 자체적으로 단계를 격상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중앙사고수습본부와 협의를 실시하고,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에 보고 후 단계를 조정한다.

6 거리두기 단계별 1회용품 사용규제 적용방안

- □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는 환경부(장관 조명래)로부터 '거리 두기 단계별 1회용품 사용규제 적용방안'을 보고받고 이를 논의하였다.
 - 환경부는 사회적 거리 두기 개편에 따라 각 단계별로 지자체가 적용할 **1회용품 사용규제 가이드라인을 마련**하고, **12월 1일(화)**부터 적용하다.











- 지난 2월 23일 코로나19로 위기단계가 심각 단계로 격상됨에 따라, 감염 확산을 방지하기 위하여 식품접객업소 내 1회용품 사용규제를 지자체별 실정에 맞게 운용하도록 하였다.
 - 그러나 그간 전국 지자체가 일률적으로 1회용품 사용을 허용하는 경우가 많았으며, 이로 인해 특히 커피전문점과 패스트푸드점에서 1회용 컵 사용이 증가하는 상황이다.
- 이에 코로나19 확산 정도에 따라 1회용품 사용을 규제하기 위하여 사회적 거리 두기 단계별로 1회용품 사용규제 방안을 마련하였다.
 - 우선 거리 두기 1단계에서는 개인컵·다회용컵 등 다회용기를 사용하고, 1회용품은 사용규제를 유지한다.
 - 거리 두기 1.5단계에서 2.5단계까지는 다회용기 사용을 원칙으로 하고, 고객 요구 시에만 1회용품 제공을 허용한다.
 - 거리 두기 3단계 격상 시에는 지자체장이 판단하여 고객 요구 시 1회용품 제공을 허용하거나 1회용품 사용규제를 제외할 수 있도록 하는 등 지역 상황에 맞게 타력적으로 운영하도록 했다.
- 환경부는 코로나 상황을 이유로 무조건 1회용품을 사용하기보다는 충분히 세척·소독한 다회용기를 사용하고, 손 소독 등 기본적인 방역수칙을 철저히 지키면서 1회용품 사용을 줄일 것을 당부했다.











7 1.5단계 격상에 따른 음식점 등 점검계획

- □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는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김강립)로부터 **'1.5 단계 격상에 따른 음식점 등 점검계획'**을 보고 받고 이를 **논의** 하였다.
 - 식약처는 코로나19 확산으로 수도권의 거리 두기가 1.5단계로 격상됨에 따라, 다수가 밀집하는 시설과 그 주변 음식점 등을 점검하여 감염 확산을 차단할 계획이다.
 - 지자체, 경찰청과 합동으로 거리 두기 1.5단계 조치가 적용되는 11월 19일(목)부터 12월 2일(수)까지 2주 동안 방역수칙 준수 여부를 점검한다.
 - 특히 최근 40대 이하의 감염이 늘어남에 따라, 젊은 층이 밀집하는 시설과 지역을 중심으로 진행할 예정이다.
 - 이에 따라 젊은 층이 다수 밀집하는 **대학가**, 공연장이 밀집된 **대학로 등 문화거리**와 타임스퀘어, 스타필드 등의 **쇼핑센터 주변의** 음식점과 카페를 대상으로 마스크 착용 등을 집중 점검한다.
 - 헌팅포차, 감성주점, 클럽 등 유흥시설에 대해서는 **춤추기 금지, 테이블 간 이동 금지** 등 1.5단계 격상에 따라 새로 **추가된** 수칙의 준수 여부를 점검한다.
 - 이와 함께 유관 기관 등을 통해 거리 두기 격상에 따라 변경된 방역수칙에 대한 홍보도 병행할 예정이다.











8 자가격리자 관리 현황 및 사회적 거리 두기 이행 상황

- □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는 **행정안전부**(장관 진영)로부터 **자가격리자** 관리 현황을 보고 받고 이를 점검하였다.
 - 11월 19일(목) 18시 기준 자가격리 관리 대상자는 총 4만 4184명이고, 이 중 해외 입국 자가격리자는 2만 2192명, 국내 발생 자가격리자는 2만 1992명이다.
 - 아울러 각 지방자치단체는 해외입국자나 거처가 없는 자가격리자를 대상으로 65개소 2,704실의 임시생활시설을 운영하고 있으며, 1,212명이 입소(44.8%)하여 격리 중이다.
 - 어제(11.19.)는 격리장소를 **무단이탈한 1명을 적발**하여, 고발을 진행하고 있다.
- □ 11월 19일(목) 각 지방자치단체에서는 ▲식당·카페 2,863개소, ▲ 실내체육시설 1,362개소 등 23개 분야 총 1만2826개소를 점검하여, 방역수칙 미준수 115건에 대해 현장지도하였다.











- < 붙임 > 1. 사회적 거리 두기 1단계 및 1.5단계 방역조치 비교표
 - 2. 지역별 사회적 거리두기 단계 현황
 - 3. 거리 두기 2단계 기준 및 주요 조치사항
 - 4. 감염병 보도준칙
- <별첨> 1. 코로나19 예방 손씻기 포스터
 - 2. 일상 속 유형별 슬기로운 방역생활 포스터 6종
 - 3. 코로나19 일반국민 10대 수칙(대응지침 9판 부록5)
 - 4. 코로나19 유증상자 10대 수칙(대응지침 9판 부록5)
 - 5. 코로나19 고위험군 생활수칙(대응지침 9판 부록5)
 - 6. 생활 속 거리 두기 행동수칙 홍보자료(3종)
 - 7. 마음 가까이 두기 홍보자료
 - 8. 생활 속 거리 두기 실천지침: 마스크 착용
 - 9. 생활 속 거리 두기 실천지침: 환경 소독
 - 10. 생활 속 거리 두기 실천지침: 어르신 및 고위험군
 - 11. 생활 속 거리 두기 실천지침: 건강한 생활 습관
 - 12. 자가격리 대상자 및 가족·동거인 생활수칙
 - 13. <입국자> 코로나19 격리주의 안내[내국인용]
 - 14. 잘못된 마스크 착용법











1단계 및 1.5단계 방역조치 비교표

□ 다중이용시설

구분		1단계	1.5단계		
	중점관리시설	▲(공통) 마스크 착용, 출입자 당	병단 관리, 환기·소독		
	유흥시설 5종 (클럽, 헌팅포차 등) ▲ 시설 면적 4m²당 1명 인원 제한		▲ <u>춤추기 금지, 좌석 간 이동 금지</u> <u>추가</u>		
	방문판매 직접판매홍보관	▲ 시설 면적 4m'당 1명 인원 제한 ▲ 노래, 음식 제공 금지	▲ 21시 이후 운영 중단 추가		
	노래연습장	▲이용한 룸은 바로 소독하고 30분 후 사용	▲ <u>시설 면적 4m²당 1명으로 인원</u> 제한 추가 ▲ 음식 섭취 금지 추가		
	실내 스탠딩 공연장	▲ 시설 면적 4m²당 1명 인원 제한	▲ 음식 섭취 금지 추가		
	식당·카페	▲ 150m² 이상의 시설은 ① 테이블 간 1m 거리두기, ② 좌석 / 테이블 한 칸 띄우기, ③ 테이블 간 칸막이 설치 중 한 가지 준수	▲ <u>수칙은 동일, 50㎡ 이상의 시설로</u> 의무화 대상 확대		
	일반관리시설				
	실내체육시설	▲마스크 착용, 출입자 명단 관리, 환기·소독 ▲시설 면적 4㎡당 1명 인원 제한	▲ 음식 섭취 금지 추가		
	결혼식장		▲ 시설 면적 4m [*] 당 1명 인원 제한 추가		
	장례식장		▲ <u>시설 면적 4m²당 1명 인원 제한 추가</u>		
	목욕장업		▲ 시설 면적 4m³당 1명 인원 제한 추가		
	영화관	▲마스크 착용, 출입자 명단	▲ 다른 일행 간 띄워 앉기 추가		
	공연장	관리, 환기·소독	▲ 다른 일행 간 띄워 앉기 추가		
	PC방		▲ 다른 일행 간 띄워 앉기 추가		
	오락실· 멀티방 등		▲ 시설 면적 4m*당 1명 인원 제한 추가		











	구분	1단계	1.5단계
	학원·		▲ 시설 면적 4m'당 1명 인원 제한 또는
	직업훈련기관		<u>한 칸 띄우기 추가</u>
	독서실·		▲다른 일행 간 띄워 앉기 추가
	스터디카페	▲마스크 착용, 출입자 명단	<u> 10 </u>
	놀이공원·	관리, 환기·소독	▲ 수용인원의 절반으로 인원 제한 추가
	워터파크		
	이·미용업	▲ <u>시설 면적 4m⁴</u>	▲ <u>시설 면적 4m²당 1명 인원 제한 또는</u>
			한 칸 띄우기 추가
	상점·마트·	│ ▲ 마스크 착용, 환기·소독	▲ 추가 수칙 없음
	백화점	- 1 18, 27 1 1	
	국공립시설	│ ▲ 경륜·경마 등 50% 인원 제한	▲ <u>경륜·경마 등 20% 인원 제한</u>
	ᄀᄋᆸᄭᄅ	- O E O 이 O JU/O 다면 세인	▲ <u>이외 시설 50% 인원 제한</u>
사회복지시설		▲철저한 방역 하에 운영	

□ 일상 및 사회·경제적 활동

구분	1단계	1.5단계
마스크 착용 의무화	▲ 중점일반관리사설, 대중교통, 의료 기관, 약국, 요양시설, 주야간보호 시설, 집회·시위장, 실내 스포츠 경기장, 고위험 사업장, 종교시설	▲ <u>실외 스포츠경기장 추가</u>
모임·행사	▲ 500명 이상 행사는 지자체 신고·협의 필요, 방역수칙 의무화	▲ 1단계 조치 유지하되 집회·축제·대규모 콘서트·학술 행사는 100인 이상 금지
스포츠 관람	▲ 50% 이내로 관중 입장	▲ <u>30% 이내로 관중 입장</u>
등교	▲밀집도 2/3 원칙, 조정 가능	▲ 밀집도 2/3 준수
종교활동	▲좌석 한 칸 띄우기 ▲모임·식사 자제 권고 (숙박행사 금지)	▲ 정규예배 등 좌석 수의 30% 이내로 제한 ▲ 모임·식사 금지
직장근무	▲기관·부서별 적정비율 재택 근무 실시 권고(예: 1/5 수준) ▲콜센터·유통물류센터 마스크 착용 의무화	▲ 기관·부서별 재택근무 확대 권고 (예: 1/3 수준) ▲ 콜센터·유통물류센터 마스크 착용, 거리두기, 환기·소독 의무화











지역별 사회적 거리두기 단계 현황(11.7.~)

(2020.11.19.(목) 17:00 기준)

<단계격상(17): 광역(4)+기초(13)> ※ 광역 _____

76	지역		단계격	상일/지역	격	단계격하일/지역		
구분	권역	시도	날짜/지역	조차단계	비고	날짜/지역	조치단계	비고
1		서울	<u>11.19.(서울)</u>	<u>1.5</u>	• <u>12.2.까지</u>	-	-	-
2	수도권	경기	11.17.(고양) <u>11.19.(경기)</u>	<u>1.5</u>	• <u>12.2.까지</u>	_	-	-
3		인천	<u>11.23.(인천)</u> ¹)	1.5	• <u>12.6.까지</u> •옹진 강화 1단계 유지	-	_	-
4		세종	-	-		-	-	-
5	ᅔᅯᄀᆝ	대전	-	-		-	-	-
6	충청권	충북	_	-		_	-	_
7		충남	11.5.(천안,아산)2)	1.5		-	-	-
8		광주	<u>11.19.(광주)</u>	1.5		-	-	-
9		전북	_	_		_	_	_
10	호남권	전남	11.13.(광양) 11.14.(여수) 11.19.(목포, 무안) 11.20.(순천) ³⁾	1.5 2(순천)	•무인군 내 삼향읍 상향	-	_	-
11	경 북 권	대구	_	-		_	-	-
12	つう世	경북	-	-		-	<u> </u>	-
13		부산	-	-		-	-	-
14	경남권	울산	_	-		_	-	-
15		경남	11.19.(하동) 11.20.(창원)	1.5 1.5		-	-	-
16	강원	강원4)	11.10.(원주) 11.19.(철원) 11.21.(횡성)	1.5	•124.까지 (횡성)	-	_	-
17	제주	제주	_	_		_	_	

¹⁾ 인천시: 서울,경기 대비 일 확진자수 현저히 적어 종교, 유흥시설 완화적용

⁴⁾ 강원: 11.17. 현재 일 확진자 영서지역 편중, 1~2주 추이 봐가며 도 전체 격상여부 검토







²⁾ 천안 등: 지역 내 확진자 수 등 고려 거리두기 개편안 시행(11.7.) 전 강화조치

³⁾ 순천: 11.11. 1.5단계 격상 후 20일부터 2단계로 다시 격상





거리 두기 2단계 기준 및 주요 조치사항

1. 2단계 격상 기준

- **(수도권)** 1.5단계 조치 실시 1주 경과 후 **주평균 일일 확진자 수**가 **200**명을 초과
- (강원도) 1.5단계 조치 실시 1주 경과 후 **주평균 일일 확진자 수**가 **20명을 초과**
- (전국) 전국 확진자 수 300명 초과하는 상황이 1주 이상 지속

2. 2단계 주요 조치사항

- □ 다중이용시설
 - (중점관리시설) 유흥시설 5종 집합금지, 식당은 21시 이후 포장· 배달만 허용, 카페는 포장·배달만 허용, 노래연습장·실내 스탠딩 공연장·방문판매 직접판매홍보관 21시 이후 운영 중단
 - (일반관리시설) 이용인원 제한 강화하고 위험도 높은 활동 금지
 - * 공연장·영화관 등 좌석 한 칸 띄우기 및 음식 섭취 금지, 실내체육시설 21시 이후 운영 중단. 목욕장업 음식 섭취 금지 등
 - (국공립시설) 경륜·경마 등 중단, 이외 시설 30% 이내로 인원 제한
- □ 일상 및 사회·경제적 활동
 - (마스크 착용) 실내 전체, 위험도 높은 실외 활동 시 의무화
 - (모임·행사) 100인 이상의 모임·행사 금지
 - * 전시·박람회, 국제회의는 시설 면적 4㎡당 1명으로 인원 제한, 100인 미만 기준 미적용
 - **(스포츠 관람)** 경기장별 수용 가능인원의 **10%로 관중 입장 제한**
 - (종교활동) 정규예배 등 좌석 수 20% 이내로 인원 제한, 모임·식사 금지
 - **(교통시설 이용)** 교통수단(차량) 내 음식 섭취 금지(국제항공편 제외)











감염병 보도준칙

○ 다음은 2020년 4월 28일, 한국기자협회·방송기자연합회·한국과학기자 협회에서 제정한 「감염병 보도준칙」의 주요 내용으로, 감염병 관련 보도 시에 참고해 주시길 바랍니다.

감염병 보도준칙

■ 전문

감염병이 발생했을 때 정확하고 신속한 정보는 국민의 생명 보호와 안전에 직결되는 만큼 무엇보다 정확한 사실에 근거해 보도해야 한다.

추측성 기사나 과장된 기사는 국민들에게 혼란을 야기한다는 점을 명심하고, 감염병을 퇴치하고 피해 확산을 막는데 우리 언론인도 다함께 노력한다. 감염병 관련 기사를 작성할 때는 반드시 전문가의 자문을 구한 뒤 작성하도록 하고, 과도한 보도 경쟁으로 피해자들의 사생활이 침해되지 않도록 최대한 노력한다. 우리 언론인은 감염병 관련 기사가 우리 사회에 미치는 영향력과 사회적 파장이 크다는 점을 이해하고 다음과 같이 원칙을 세워 지켜나가고자 한다.

■ 기본 워칙

1. 감염병 보도의 기본 내용

- 가. 감염병 보도는 해당 병에 취약한 집단을 알려주고, 예방법 및 행동수칙을 우선적, 반복적으로 제공한다.
- 나. 감염병 치료에 필요한 의약품이나 장비 등을 갖춘 의료기관, 보건소 등에 대한 정보를 제공한다.
- 다. 감염병 관련 의학적 용어는 일반인들이 이해하기 쉽게 전달한다.

2. 신종 감염병의 보도

- 가. 발생 원인이나 감염 경로 등이 불확실한 신종 감염병의 보도는 현재 의학적으로 밝혀진 것과 밝혀지지 않은 것을 명확하게 구분하여 전달한다.
- 나. 현재의 불확실한 상황에 대해 의과학 분야 전문가의 의견을 제시하며, 추측, 과장 보도를 하지 않는다.
- 다. 감염병 발생 최초 보도 시 질병관리청을 포함한 보건당국에 사실여부를 확인하고 보도하며, 정보원 명기를 원칙으로 한다.

3. 감염 가능성에 대한 보도

- 가. 감염 가능성은 전문가의 의견이나 연구결과 등 과학적 근거를 바탕으로 보도한다.
- 나. 감염병의 발생률, 증가율, 치명률 등 백분율(%) 보도 시 실제 수치(건, 명)를 함께 전달한다.
- 다. 감염의 규모를 보도할 때는 지역, 기간, 단위 등을 정확히 전달하고 환자수, 의심환자수, 병원체보유자수(감염인수), 접촉자수 등을 구분해 보도한다.











4. 감염병 연구 결과 보도

- 가. 감염병의 새로운 연구결과 보도 시 학술지 발행기관이나 발표한 연구자의 관점이 연구기관, 의료계, 제약 회사의 특정 이익과 관련이 있는지, 정부의 입장을 일방적으로 지지하는지 확인한다.
- 나. 감염병 관련 연구결과가 전체 연구중의 중간 단계인지, 최종 연구결과물인지 여부를 확인한 후 보도한다. (예: 임상시험 중인 약인지, 임상시험이 끝나고 시판 승인을 받은 약인지 구분해 보도)

5. 감염인에 대한 취재·보도

- 가. 불확실한 감염병의 경우, 기자를 매개로 한 전파의 우려가 있기 때문에 감염인을 직접 대면 취재하지 않는다.
- 나. 감염인은 취재만으로도 차별 및 낙인이 발생할 수 있으므로 감염인과 가족의 개인정보를 보호하고 사생활을 존중한다.
- 다. 감염인에 대한 사진이나 영상을 취재·보도에 활용할 경우 본인 동의없이 사용하지 않는다.

6. 의료기관 내 감염 보도

의료기관 내 감염 확산에 대한 취재·보도 시, 치료환경에 대한 불안감 및 혼란을 고려해 원인과 현장 상황에 대해 감염전문가의 자문과 확인이 필요하다.

7. 감염병 보도 시 주의해야 할 표현

가. 기사 제목에 패닉, 대혼란, 대란, 공포, 창궐 등 과장된 표현 사용 "국내 첫 환자 발생한 메르스 '치사율 40%'… 중동의 공포 465명 사망!" ""해외여행 예약 0건"…여행·호텔업계 코로나19 이어 '코리아 포비아' 악몽"

나. 기사 본문에 자극적인 수식어의 사용

"지난 2013년 한국 사회를 혼란에 빠트렸던 '살인진드기' 공포가 또다시 수면 위로 떠올랐다." "온 나라에 사상 최악의 전염병 대재앙을 몰고 온 메르스(중동호흡기질환) 의심환자가 또 발생했다." "'코로나19'에 박살난 지역경제…"공기업 역할해라""

다. 오인이 우려되는 다른 감염병과의 비교 "야생진드기 에이즈보다 무섭네...물리면 사망위험 커" "전파력 메르스 '1000배'…홍콩독감 유입 땐 대재앙"

■ 권고 사항

- 1. 감염병 발생시, 각 언론사는 특별취재팀을 구성해 감염병에 대한 충분한 사전 교육을 받지 않은 기자들이 무분별하게 현장에 접근하는 일이 없도록 해야 한다.
- 2. 감염병 발생시, 보건당국은 언론인을 포함한 특별대책반(T/F)를 구성해, 관련 정보가 국민들에게 신속하고 정확하게 전달되도록 해야 하고, 위험 지역 접근취재 시 공동취재단을 구성해 기자들의 안전 및 방역에 대비해야 한다.











■ 별첚

<참고1> 감염병 정보공개 관련 법령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약칭: 감염병예방법)

제34조의2(감염병위기 시 정보공개)

- ① 질병관리청장, 시·도지사 및 시장·군수·구청장은 국민의 건강에 위해가 되는 감염병 확산으로 인하여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38조제2항에 따른 주의 이상의 위기경보가 발령되면 감염병 환자의 이동경로, 이동수단, 진료의료기관 및 접촉자 현황 등 국민들이 감염병 예방을 위하여 알아야하는 정보를 정보통신망 게재 또는 보도자료 배포 등의 방법으로 신속히 공개하여야 한다. 다만, 성별, 나이, 그 밖에 감염병 예방과 관계없다고 판단되는 정보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정보는 제외하여야 한다. <개정 2020. 3. 4., 2020. 8. 11., 2020. 9. 29.>
- ② 질병관리청장, 시·도지사 및 시장·군수·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공개한 정보가 그 공개목적의 달성 등으로 공개될 필요가 없어진 때에는 지체 없이 그 공개된 정보를 삭제하여야 한다. <신설 2020. 9. 29.>
- ③ 누구든지 제1항에 따라 공개된 사항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질병관리청장,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서면이나 말로 또는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이의신청을할 수 있다. <신설 2020. 3. 4., 2020. 8. 11., 2020. 9. 29.>
- 1. 공개된 사항이 사실과 다른 경우
- 2. 공개된 사항에 관하여 의견이 있는 경우
- ④ 질병관리청장,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제3항에 따라 신청한 이의가 상당한 이유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지체 없이 공개된 정보의 정정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신설 2020. 3. 4., 2020. 8. 11., 2020. 9. 29.>
- ⑤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 따른 정보공개 및 삭제와 이의신청의 범위, 절차 및 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20. 3. 4., 2020. 9. 29.> [본조신설 2015. 7. 6.]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약칭: 감염병예방법 시행규칙)

제27조의4(감염병위기 시 정보공개 범위 및 절차 등)

- ① 질병관리청장은 법 제34조의2제1항에 따라 정보[']를 공개하는 경우에는 감염병 위기상황, 감염병의 특성 및 역학적 필요성을 고려하여 공개하는 정보의 범위를 결정해야 한다. <개정 2020. 6. 4., 2020. 9. 11.>
- ② 법 제34조의2제2항에 따라 서면으로 이의신청을 하려는 사람은 별지 제18호의5서식의 정보공개 이의신청서를 질병관리청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개정 2020. 6. 4., 2020. 9. 11.> [본조신설 2016. 1. 7.]

[제27조의3에서 이동 <2020. 6. 4.>]

부 칙 <보건복지부령 제754호, 2020. 10. 7.>

이 규칙은 2020년 10월 13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31조제1항, 제42조의3제2항 및 별지 제30호의4서 식의 개정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출처: 한국기자협회(http://www.journalist.or.kr/news/section4.html?p_num=17)

<참고2> 감염병 보도시 기본 항목

- 질병정보 (국내외 발생현황, 병원체, 감염경로, 잠복기, 증상, 진단, 치료, 환자관리, 예방수칙)
- 의심 및 확진환자 현황 (신고건수, 의심환자 건수, 확진환자 건수)
- 확진 환자 관련 (환자의 이동경로, 이동수단, 진료의료기관, 접촉자 현황 등)
- 국민행동요령 및 정부의 대책, 감염병 확산방지 및 피해최소화 위한 지역사회와 국민참여 등

■ 부 칙

이 준칙은 2020년 4월 28일부터 시행하고, 이 준칙을 개정할 경우에는 제정 과정에 참여한 3개 언론 단체 및 이 준칙에 동의한 언론단체로 개정위원회를 만들어 개정한다.

2020년 4월 28일 한국기자협회, 방송기자연합회, 한국과학기자협회





